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(송기헌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7572

발의연월일: 2025. 1. 16.

발 의 자:송기헌·강훈식·김태년

박 정・백혜련・어기구

이성윤 · 조승래 · 주철현

허 영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한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시 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우리나라는 노인인구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음. 이에 따라 노인의 체육활동에 대한 관심도 높아 지고 있는데, 노인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과 함께 노인 친화적인 체 육시설도 적극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에 특화된 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 친화적인 체육 활동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(안 제10조의2제2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건강을 증진시키고 삶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인에 특화된 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	개 정 안
제10조의2(노인 체육의	의 진흥) ①	제10조의2(노인 체육의 진흥) ①
(생 략)		(현행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	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
		인 건강을 증진시키고 삶의 활
		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인에
		특화된 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
		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
		<u>할 수 있다.</u>
② (생략)		<u>③</u> (현행 제2항과 같음)